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44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의자 : 천하람 · 이주영 · 이준석

이개호 · 정성호 · 주철현

신영대 · 황운하 · 주호영

김교홍 · 허영 · 김상욱

김종민 · 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투자 환경 악화로 벤처·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실제로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벤처기업 평균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등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가가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벤처업계를 향한 정책 기조

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벤처투자의 민간투자 저조 및 낮은 접근성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개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소액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벤처시장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수 · 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안 제12조의3제1항)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현행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인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2조의4제1항)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현행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인 2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지원 확대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안 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안 제13조제4항)

벤처투자회사 등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3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이 해당 조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의 공제하는 금액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되, 기존 벤처캐피탈과의 역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인상폭을

제한하며,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로 3년 연장함.

2) 개인의 벤처투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일몰기한 연장(안 제
14조)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조
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함.

3) 거주자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 상향
(안 제16조제1항)

거주자가 해당 조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출자 또
는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제3호 · 제4
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
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서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
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
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
른 「상법」 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

